

전자무역시대에 있어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연구

전순환*

목 차

- I. 서론
- II. 전자무역과 무역관행의 변화
- III. NCITD와 CMI규칙의 전자선화증권
- IV. 볼레로 선화증권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의 도입으로 이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고, 무역유관기관들 간에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정보의 흐름과 교환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기업의 규모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의 도입으로 기존의 무역거래는 정보수집, 해외마케팅, 거래협상, 물류운송,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류운송의 단계로서,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교부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의 도입에 따른 전자무역의 도입으로 기존의 종이선화증권이 전자선화증권으로 대체되는 무역거래관행의 변화가 행해지고 있다. 즉, 기존의 종이선화증권은 각종 실험단계를 거쳐 NCITD 선화증권, CMI 선화증권, 볼레로 선화증권 등의 전자선화증권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무역의 의의와 이의 도입에 따른 무역관행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중부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II. 전자무역과 무역관행의 변화

2.1. 전자무역의 의의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e-Trade)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¹⁾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2001년 1월에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사이버무역 대신에 전자무역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무역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한다면, 전자무역은 사이버무역의 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무역은 무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의 전송은 물론 무역업무의 처리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 즉 무역업무의 처리과정이나 처리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전자무역은 “e-Trade”와 같이 영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무역”과 같이 한글로 표현할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무역과 혼동되기 쉽거나 또는 무역의 상무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 유형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국제무역분야에 응용한 것으로서, “기업간 국제전자상거래(International B2B)”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전자무역은 유통이나 국내마케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과 국내소비자, 국내기업간의 전자상거래와 달리, 해외무역업자와의 무역업무 뿐만 아니라 EDI 등과 같은 폐쇄적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국내 무역유관기관과의 무역절차 이행도 포함된다.

2.2. 전자무역관행의 변화

2.2.1. 무역거래기능의 변화

1) 무역절차의 획기적 축소

전자무역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역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EDI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무역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절차가 획기적으로 축소·간소화된다는 것이다. 즉, 여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역업무 처리기간의 단축, 무역업무 처리비용의 절감, 무역관련 전문인력의 축소 등의 효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무역거래기능의 범세계화

인터넷은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기능이 범세계화된다. 즉,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특정 시장에 전문화하거나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해 왔으며, 거래상대방과의 접촉에도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직접 접촉하는 대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무역에서는 상품광고, 거래상담, 마케팅, 부품조달 등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1) 전자무역이 이루어지는 수단인 “컴퓨터등(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의 개념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2조 (f)의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메시지를 생성, 송신, 수신, 저장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2) 전순환, “전자무역거래관행의 변화에 관한 고찰”, 『창업정보화연구』, 제6권 제1호, 2003.3, p.353.

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역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즉, 무역인력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와 무역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홍보, 마케팅, 거래선 발굴, 무역정보 검색, 거래협상, 국내무역유관기관과의 정형화된 무역업무 등을 EDI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역거래대상물품의 광역화

온라인제품(on-line products)은 상품의 주문과 배송, 대금결제 등이 인터넷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의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s)³⁾과 여행정보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거래의 탐색과 상담, 상품의 주문과 배송, 대금결제 등의 전과정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제품의 국제적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전자무역의 주요한 대상은 디지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무역의 소매화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도매형태의 거래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형태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무역정보의 공유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무역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각종 디렉토리, 거래알선기관, 현지광고,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무역관

련 정보들을 웹사이트(Web Site)를 통하여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2.2. 무역거래관행의 변화

1) 마케팅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전개되면서 해외시장조사, 거래처의 선정 및 거래정보의 수집·확산의 관행이 변화된다. 기존의 무역거래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처의 선정은 주로 무역유관기관을 통한 위탁조사, 국내외 공공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공관, 영사관 등)의 이용, 상공인명부(directory)의 이용, 해외출장, 해외광고, 국제무역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처의 선정은 개별기업, 무역유관기관 및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무역에 관련된 수많은 시장정보, 거래선정보 및 상품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 및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세계 대상의 광고 및 마케팅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에 적합한 신제품의 개발, 효율적인 주문처리, 고객관리 및 대금회수 등을 위한 내부체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통신을 통한 시장지향적인 일대일마케팅활동으로 거래상대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의사표시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전개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수단이 변화된다. 기존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우편, 전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등의 통신수단에 의해 주로

3) 디지털제품이란 함은 전자적 형태로 변환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말한다.

행하여졌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에 있어서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우편과 같은 문자정보는 전자우편, 전화와 같은 음성정보는 인터넷폰, 팩시밀리와 같은 이미지 정보는 인터넷팩스, 화상회의와 같은 영상정보는 인터넷화상회의의 시스템에 의해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으로 통합되고 있다. 텔렉스, 전보 및 팩시밀리 등의 통신수단 대신에 전자우편 등이 이용되는 이유는 경제성, 신속성, 양방향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 계약체결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을 전개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체결관행이 변화된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그 성질상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더라도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거래조건을 약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는 B-to-B 형태의 국제전자상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의 상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자거래약정(Electronic Commerce Agreement; E-Agreement) 및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 I-Agreement)을 이용하게 된다.

4) 물품인도 및 물류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을 전개되면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물류관행이 변화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물품을 반드시 운송하여야 한다.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유형재를 중심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항공기에 의한 항공운송, 철도나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송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전자무역거래시에도 유형재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운송과정을 통하여 합의된 장소까지 계약물품을 이동시키게 된다. 그

러나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영상물 등의 전자적 형태의 무형재는 사이버공간상에서 전자적 형태로 물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의 소매화(point to point sale)로 인하여 물품배송 시스템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제품을 제외한 책이나 음반 등 부피가 적고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물품 등은 주로 국제택배 또는 우편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송된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물품을 공급받 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현지생산, 현지보관, 현지배달이라는 물품 배송시스템과 함께 지능형 운송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무역시대에는 원거리의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함으로써 물류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즉, 디지털제품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유통될 수 있으며, 유형재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종합 물류정보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화물의 이동을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업자는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물류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물류업자의 배달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송중인 물품의 배달상태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으로 추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관이나 물품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⁴⁾

5) 문서제공 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을 전개되면서 물품의 인도증거서류 및 기타 제공서류가 종이문

4) 세계적인 특송업체인 FedEx(Federal Express)나 UPS 등은 배달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에서 배달까지의 물품의 이동상황을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다.

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상업송장과 같은 계약물품의 일치증명서류, 선화증권과 같은 물품의 인도증거서류, 기타 계공서류가 우편방식에 의해서 종이문서의 형태로 전달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무역에서는 이들 서류가 EDI나 전자우편방식에 의해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송신된다. 이러한 전자 문서 중에서 정형화된 문서는 주로 EDI 방식에 의해서 행해지고, 비정형화된 문서는 전자우편에 의해서 행해짐으로써 서류없는 무역거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6) 대금결제관행의 변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전개되면서 대금결제방식이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환(T/T)·우편송금환(M/T)·송금수표(D/D)와 같은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현금결제방식(COD)과 서류결제방식(CAD), 지급인도조건(D/P)·인수인도조건(D/A)과 같은 추심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 등이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카드(Credit Card)⁵⁾,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 Transfer), 세계무역센터협회(WTCA)에 의한 무역카드 시스템(TradeCard system), SWIFT⁶⁾의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등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그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NCITD와 CMI규칙의 전자선화증권

3.1.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선화증권의 위기⁷⁾를 극복하는 방안은 선화증권이 가진 권리증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선화증권의 EDI화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운송 중인 물품이 계속해서 전매되는 일부 상품군 특히, 원유의 경우에 이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두번째 방안에서의 핵심문제는 해상선화증권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EDI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EDI가 동일한 운영체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해상선화증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종이서류에서 EDI메시지로 전환하는 경우, 변화는 거래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상선화증권의 기능을 EDI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EDI는 아주 많은 다른 방법으로 선화증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⁸⁾

5)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이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이다. SET는 온라인 카드결제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에 사용되던 SSL이 보안성이 취약하여 해킹 등 정보유실우려가 크고, 고객의 결제정보가 전자상점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VISA, Master 등 세계 유수의 신용카드회사들이 IBM, Microsoft, Netscape 등 컴퓨터 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1997년 3월 31일에 개발완료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고객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하고 고객이 이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카드발행회사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6) SWIFT는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로 국제간의 대금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통신의 연결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벨기에 법(Belgium Law)에 의하여 설립

된 비영리조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장은 스위프트에 의한 전송신용장을 출력하여 이용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은행간의 금융데이터전신망이어서 대고객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7) 선화증권의 위기(The B/L Crisis)란 현대의 해상운송의 경우에 운송고속화로 인하여 선화증권이 수하인에 도착하는 시간이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지연되어 화물인도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하인과 운송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江頭憲治郎, 海上運送狀と電子式 運送書類, 日本海法會誌, 復刊 第32號(通卷 第61號), 勁草書房, 1988, p.4.

8) Hugh M. Kindred, Trading Internationally by Electronic Bills

즉, 종래의 선화증권에서 전자선화증권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선화증권이 가진 상징적인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혹은 준유통증권(semi-negotiable instrument)으로서의 법적인 성격,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담보(security)기능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물품의 전매기능을 EDI로 어떻게 달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적 서류가 해상운송 중인 화물의 전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성서류 대신에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는 없으며 EDI가 이러한 권리증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증명을 송신하여야만 한다. 즉,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에 대하여 현재 권리가 있는 자의 실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시도에 공통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선화증권 자체를 유통시키는 대신에 선화증권에 관계있는 UNSM의 수취인, 즉 선화증권의 보관자(depository)를 중앙등록기관(Central Registry)으로 지정하여 선화증권 양도의 경우 그 양수인을 통지하여 현재 시점에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운송중의 물품에 대한 권리의 전자적 이전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존재했지만, 광범위하게 실현된 것은 없었다.¹⁰⁾

첫째,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의 해상무역서류시스템(Seaborne Trade Documentation System: SeaDocs)으로서 INTERTANKO가 선화증권 원본에 상당하는 UNSM의 수탁자(trustee)

가 되어 선화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미국 체이스 맨하턴(Chase Manhattan)은행의 체이스 전자선화증권(Chase Electronic Bills of Lading: CEBOL) System으로서 운송인과 접속된 은행의 컴퓨터로부터 출력된 선화증권을 은행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에게 발행한다. 발행된 선화증권을 다시 은행으로서 매입하게 되지만 체이스 맨하턴은행이 동시에 수화인은행이 되는 경우 매입까지 전자화된다.

셋째, 무어(John C. Moore)의 전자서류(Electrodoc)으로서 1986년 이래로 미국의 해사법협회의 화물운송위탁회의 의장인 무어의 주장으로 CMI에서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다루고 있는 소위원회에서 Electrodoc의 표제가 채택되었다.

중앙자료은행에 대해서 선화증권등록을 행한 소지인에게 유일한 키코드(Key code)가 발급되고 이후 소지인이 변경될 때마다 신키코드가 발급되어 구키코드는 동시에 파기됨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이 관리된다. 이것은 CMI규칙의 기초가 된 개념이다.

넷째, 칩선화증권시스템으로서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조각에 선화증권정보를 입력하여 이것을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수화인은행의 컴퓨터 내에서 L/C와 대조를 하는 시스템이다. L/C발행 은행에 칩선화증권자료가 전송되어진 후, 칩선화증권을 재출력해서 다른 용도에 제공한다. 이러한 칩을 제공함으로써 무서류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¹¹⁾

다섯째, 바코드(Bar code)선화증권시스템으로 선화증권이 바코드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화물이 운송중일 때 검색될 수 있

of Lading, Banking & Finance Law Review, Vol.7, 1992, p.270.

9) Paul Todd,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90, p.121.

10) JASTPRO, 貿易手續EDI化に係る法的諸問題, 1993, p.37.

11) Joseph Bonney, Computer chip in a can, American Shipper, August 1992, p.50.

다. 이 방법은 Bar code가 EDI와 결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송화인과 운송인이 운송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여섯째, 발틱국제해운동맹(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의 전자선화증권으로 암호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운송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당사자로 역할을 하며 전자선화증권의 양도시 디지털 서명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개발단계에 있다.¹³⁾

3.2. NCITD의 전자선화증권

NCITD의 전자선화증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자선화증권이란 표준적인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선화증권의 고유번호 및 개인인증코드(유통가능 선화증권과 물품에 대한 권리자를 식별할 때) 등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주선 및 운송메시지(International Forwarding and Transport Message)의 Framework Message를 말한다.¹⁴⁾

미국무역간소화위원회(NCITD)의 법률문제작업부회는, 선화증권과 같은 유통성 서류를 사용하는 거래관습 및 선화증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지만, 특정 거래에서는 대금결제와 권리이전을 위해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NCITD¹⁵⁾는 ECE/WP.4의 1990년 9월 회기에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고 각국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종이의 유통성 선화증권에 상당하는 전자선화증권의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guide line)과 절차에 대하여 제안을 행하였다. 이 제안에 의하면, 모든 관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구속되는 구조/framework)가 필요하고, 제3자 등록기관이 이들 당사자간의 EDI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의 이전을 합법화시키는 배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현행의 종이의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NCITD의 전자선화증권은 다음의 3가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① 관리기관(Control Party)은 송화인 또는 운송인이 지정한 컴퓨터 통신회사로서, 신뢰성이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전송기록을 보관하며, 송화인 및 그 이후의 수화인에 대한 개인인증 코드의 제공 및 인증 등을 행한다.

② 개인인증 코드(Individual Authentication Code : IAC)는 서명 대신에 전송된 데이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이 무작위로 선정한 코드로서, 권리가 이전될 때마다 변경되며, 관리기관이 확인한 최후의 개인인증코드의 소지인이 운송화물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다.

③ 선화증권의 고유번호(Unique Bill of Lading Number)는 운송인이 수취한 화물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최초로 부여된 B/L번호이다.

NCITD의 제안은 ① 완전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인 접근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 ② 전자선화증권 메시지의 전송은 UN/EDIFACT표준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 ③ 관리기관으로서 중앙 등록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운송인 또는 송화인이 지정한 VAN

12) Joseph Bonney, Bills of Lading in bar code, American Shipper, August 1992, pp.51-52.

13)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pp.58-60.

14)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RADE/WP.4/R.710, 15 August 1990, p.4.

15)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Proposed by NCITD, TRADE/WP. 4/R. 710.

을 사용하고 있는 것, ④ 전자배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⑤ 선화증권발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NCITD의 전자선화증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종이의 선화증권을 사용하더라도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고 운송인에게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수화인이 도착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① 관리기관이 단일의 중앙등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관리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② 시스템의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 리스크의 배분을 포함한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것 등이 지적되어, 이 방식은 기업내 거래 또는 선박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간의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널리 일반적으로는 사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¹⁶⁾

3.3. CMI규칙상의 전자선화증권

3.3.1. CMI규칙의 제정과 특징

1) CMI규칙의 제정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회사는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다른 누구라도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 선화증권은 상징적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EDI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메카니즘을 달성하는 방법은 모든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EDI메시지를 선화증권 대신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합의한다면 달성가능하다. 특히 선박회사는 선박회사에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의 지시를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물품을 인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 권리는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증권의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왔지만 ED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전자적 지시를 행하는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부여된다.¹⁷⁾

그렇다면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EDI메시지를 선화증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CMI는 1990년 6월 파리총회에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을 채택했다.

1990년 6월 CMI(국제해사위원회;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는 국제운송시장에 복합운송이 정착되면서 무역거래의 모든 분야에서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EDI방식에 의한 거래가 등장하는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Rules for Electronic B/L)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이 규칙은 정보전송의 신속화를 행하기 위해 종전의 서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선화증권의 정보를 전자 데이터 통신수단에 의해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의 CMI 파리국제회의에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과 함께 채택된 본 규칙의 원형은 무역변호사에 의한 Electrodoc구상과 일맥상통한다. 원래는 CMI산하 SWB국제소위원회(위원장인 영국고등법원의 로이즈판사)의 1987년 제1차 런던회의에서 동소위원회의 한사람이었던 무역변호사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의 필요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그 후 동소위원회에서 SWB와 함께 검토를 거듭하였다. SWB에 관한 국제소위원회내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동소위원회의 위

16) 朝岡良平, 電子商去來時代における貿易慣習, 早稻田商學第376号, 1998, pp.571-572.

17)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1991(ICC Publishing S.A.), p.31.

원장의 판단으로 1988년 9월 7일에 다른 국제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전자선화증권의 검토가 결정되어 위원장으로써 스톡홀름대학의 Ramberg교수가 지명되었다.¹⁸⁾

전자선화증권도 서면 선화증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인 점에서 SWB화와 같지만, SWB에 관한 통일규칙과 함께 그 검토과정중에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의 검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즉, 최종적으로는 “전자선화증권”이라고 칭해졌지만 분리된 국제소위원회의 Ramberg교수는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의 전자이전”이라는 보고서를 1989년 3월 10일에 배포하였다.¹⁹⁾

이 규칙에서 주목할 것은 운송계약의 성립, 권리의 발생·권리이전, 화물인도절차 및 전자선화증권의 법적효력에 관한 것이다. 즉, 모든 관계당사자가 해상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권리를 전자식으로 이전하는데 대하여 동의한다면 권리의 이전을 위해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필요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CMI통일규칙에 따른 전자선화증권제도하에서 운송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운송품의 인도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전자선화증권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역업무 종사자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및 관계당사자들의 폭 넓은 지지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자식 데이터에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권리증권으로 취급하여 운송품의 권리가 전시 매번 운송인의 합의 대신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존하여 왔으나 전자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대한 통지와 승인의 합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운송품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때마다 운송인의 통지수령과 양도합의가 있는 한, 더 이상 권리증권이나 그 배서가 필요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간에 EDI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선화증권은 EDI시스템을 이용한 화물수취메시지(receipt message)로 대체되고 선화증권의 발행과 그 물리적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선화증권의 배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CMI규칙의 특징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은 참여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과 같은 폐쇄적 시스템과 달리 이를 적용하려는 어떠한 계약당사자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의 시스템이다. 반면에 계약당사자들이 개별적인 약정에서 이 규칙의 적용을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EDI를 이용한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계약적 접근방식과 잘 조화되는 방식이다.²⁰⁾

CMI규칙은 기존의 EDI거래당사자간의 총괄약정 및 개별약정상의 결함을 보완하는 한편, 전자통신방식의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역에서 EDI거래의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용이하게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²¹⁾ 따라서 CMI규칙은 종래의 서류에 의한 거래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18)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日本海法會誌, 復刊 第34號, 通卷 第63號, 勁草書房, 1990, p.6.

19) 江頭憲治郎, 前掲書, p.6.

20) Boris Kozolchik,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M.L.C., Vol.123, No.2, April 1992, pp.229-230.

21) Boris Kozolchik, *op. cit.*, p.230.

특히, CMI규칙은 기존의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운송 중 물품에 대한 권리의 전자적 이전”에 관한 방식을 규정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²³⁾

이 규칙에서 고안된 개념이 운송인이 관리의 중심이 되는 개인키(Private Key) 개념의 전자선화증권이다. 개인키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기존의 선화증권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운송인이 보존하고, 송화인에게 수령통지를 전송할 때에 함께 전송하는 비밀코드이다. 이는 물품과 관련하여 송화인 또는 이 개인키의 양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할 경우, 그 지시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통성 선화증권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이 개인키의 유효한 소지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운송 중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CMI규칙상의 전자선화증권의 운용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EDI메시지에 의한 통지·확인시스템이다. 둘째,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등록기관으로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점이다. 셋째, 종래의 서면선화증권의 물리적 점유에 대응하는 것이 개인키며, 이 개인키의 이전에 의해서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CMI규칙은 강행법규가 아니며, 당사자들이 계약자유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3.3.2. CMI규칙상의 전자선화증권의 의의 및 기능

1) 전자선화증권의 의의

전자선화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이란

기존의 종이 선화증권과 다른 별도의 새로운 유형의 선화증권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법으로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선박회사와 송화인(매도인) 혹은 양수인(매수인 또는 지시인)이 서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²⁴⁾메시지를 전송하고²⁵⁾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private key ; 비밀번호)²⁶⁾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²⁷⁾ 즉 표준적인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선화증권의 고유번호 및 개인인증코드(유통성 선화증권과 물품에 대한 권리자를 식별할 때) 등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주선 및 운송메시지(International Forwarding and Transport Message; IFTM)의 Framework Message를 의미한다.²⁸⁾

2) 전자선화증권의 기능

해상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인도하였다는 물품인도의 증거서류로서 지난 오랜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서류는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이었다. 이 서류는 물품을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을 입증하

24) EDI(전자문서교환)는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여 표준화된 자료인 전자문서를 데이터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인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

25) 新堀 聰, いわゆる電子式船荷證券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19, No.8, 1991, p.1007.

26) 개인키란 전송의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성(integrity)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숫자 또는 문자를 조합시킨 암호번호이다;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 제 2조 1항.

27)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貿易手續のEDI化に係る法的问题, JASTPRO 91-19, 1991, p.17.

28)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RADE/WP.4/R.710, 15 August 1990, p.4.

22) CMI규칙 제10조.

23) 江頭憲治郎, 前掲書, pp.5-6.

는 추정적 증거서류가 된다. 또한 그 서류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는 운송인의 약속이 명기되어 있는 물권적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물품의 인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선화증권은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수취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상 유통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수취증으로서 기능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통일규칙상 수취메시지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4조 수취메시지의 양식과 내용에서 규정되어 있다. CMI통일규칙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사이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중에서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때 운송인이 전송하는 메시지 즉, 수취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취메시지는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의 발행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확히 선화증권의 수취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이 발행한 수취메시지상의 기재사항은 송화인과 운송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즉,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국제 무역거래시 운송계약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송화인의 선적요청서에 의한 운송인의 선복예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수취메시지의 기재내용은 운송계약 그 자체가 아니고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수취메시지는 운송인의 운송조건에 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CMI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²⁹⁾ 참조된 조건은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한

다.³⁰⁾ 이러한 의무는 운송계약내용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CMI통일규칙의 제5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기존의 서면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시에 운송인이 개인키를 전송한 이상 개인키의 소지인은 제3자에게 전자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주어졌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전자적 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³²⁾

즉, EDI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의 유통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품에 대한 권리의 유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CMI통일규칙에서 채택된 방법은 개인키의 사용으로 운송인이 개인키의 발행자와 관리자로서 핵심역할을 하며 키자체는 양도불능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모든 연속적인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유일한 신개인키를 발급하여야만 한다.³³⁾ 또한 개인키의 소지인으로서 본 규칙에서 규정된 송화인은 선화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습득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써 기존의 선화증권이 수행하던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전자선화증권에서도 수행된다.

3.3.3. CMI규칙상의 전자선화증권의 발행형식과 양도

1) 전자선화증권의 발행형식

29) CMI통일규칙 제4조 b항 iv호.

30) CMI통일규칙 제5조 a항.

31) Peter Jones, EDI :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p.56.

32) Jan Ramberg, The implication of new transport technologies, European Transport Law, Vol.15. No.2, 1980, p.31.

33) CMI통일규칙 제8조.

선화증권은 통상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지시식 선화증권,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선적선화증권, 이면약관이 기재된 형태의 정식선화증권(Long Form B/L),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면약관이 생략된 형태의 약식선화증권(Short Form B/L)으로 발행된다.

전자선화증권은 CMI통일규칙에 의하면 UN주경제위원회의 유엔 전자문서교환방식의 국제표준인 UN/EDIFACT(United Nations Rule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문서교환)³⁴⁾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UNCID(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무역문서의 전송교환 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제되고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계약을 위한 문서양식은 유엔 서식설계기준(UN Layout Key; UNLK)³⁵⁾ 또는 그것과 일치하는 국내기준을 따라야 한다.³⁶⁾ 즉, 유

엔에서 제정한 UNSM(United Nations Standard Message; 유엔표준메시지)의 규정이나 전자문서교환방식화를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서식표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본 규칙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송화인의 명칭, 서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물품표시 및 유보문언, 물품에 관한 종류, 수량, 외형상태 등과 동일한 정보 그리고 운송조건 등에 관한 참조내용을 전자식 메시지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의 형식과 내용의 차원에는 물품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 포장이나 갯수, 외관상 물품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표준사항³⁷⁾을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착지, 운임, 물품의 수취지, 수취일 역시 수취메시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헤이그규칙이나 국내법은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3항과 함부르규칙 제14조 1항에서는 “운송인은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화증권의 발행형식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자선화증권의 양도

선화증권의 양도성은 운송인이 원본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하는데서 유래되었다. 즉,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당사자에게 물품의 정확한 인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선화증권이 전자적 서류로 대체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관련당사자 모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34) 이것은 제조업자, 수출업자, 도매상, 분배업자, 소매상, 운송주선인, 송화인, 수화인, 운송인, 은행 그리고 정부기관 사이의 거래데이터의 국제적 전자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들의 집합이다. 이 규칙은 UN의 기구내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UN의 구주경제위원회(ECE)가 UNTDID(United Nations Trade Data Interchange Directory; 유엔거래데이터 등록)로 공표하였다. UNTDID의 구성내용을 보면 ① EDIFACT구문규칙(ISO: 국제표준화기구 9735) ② 메시지디자인 가이드라인 ③ 구문구현 가이드라인 ④ EDIFACT데이터요소 디렉토리 ⑤ EDIFACT 표준 시그먼트 디렉토리 ⑥ EDIFACT 복합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⑦ EDIFACT표준 세그먼트 디렉토리 ⑧ EDIFACT UNSM(유엔표준메시지) ⑨ UNCID(무역데이터 전송교환 통일규칙) ⑩ 관련해설자료가 있다.

35) UNLK(United Nations Layout Key)는 무역서류의 페이지와 표준화를 위해 무역과 국제운송에 이용되는 서류를 표준화한 서식으로, 유엔이 이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서류 작성방법에 상관없이 무역을 구성하는 행정, 상업, 생산, 유통에 관계하는 서류의 양식(design)에 응용 가능하다. 특히 일괄작성방식(One Run Method)에 의한 마스터(master)서류를 작성하고, 자동데이터처리(Automatic Data Processing; ADP)에 의한 서식을 말한다;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貿易關係 EDI用語集, JASTPRO 89-13, 1990, p.103.

36) CMI통일규칙 제3조 a, b, c항.

37) 헤이그규칙 제3조 3항.

이다.³⁸⁾ 첫째, 모든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을 합의하고 둘째, 그 합의는 선화증권의 대체에 대해서 특정한 양식을 취해야만 한다. 운송인은 그에게 인도지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의해 지시받을 경우에만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합의해야만 한다.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원본의 선화증권 소지에 결부되어 왔었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적 지시를 하도록 운송인이 권한을 부여한 자와 결부된다. 즉, 유통성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송신되어야만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리의 증명이다.³⁹⁾

CMI 규칙은 당사자에 의해서 채택된다면 운송인은 서면 선화증권하에서 동일한 의무를 수화인에게 확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확약은 유일한 개인키를 이전함으로써 항해중인 물품이 전매될 수 있다. 즉, 국제무역에서 EDI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전송은 한 번에 한 당사자에게만 이용가능하고 비밀로 되어 있는 소위 개인키로 진정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소위 “개인키의 소지자” 이외의 사람은 운송인에게 새로운 소지자에게 권리를 이전시킬 지시를 할 목적으로 운송인과 통신을 할 수 없어야만 한다.⁴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운송인이 전자선화증권의 소지인 즉, 개인키를 소유한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면 개인키는 취소되고 새로운 개인키가 운송인에 의해 새로운 소지자 즉, 전자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으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할 권리가 B/L의 이전으로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이전되는 동일한 방법으로 권리의 연속적인 이전이 달성될 수 있다.⁴¹⁾

이러한 개인키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수화인에게 계약적으로 구속된다고 하는 운송인의 확약, 그리고 서면 및 서명이 이 규칙에 의해 배제된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인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동규칙 제11조에서는 “운송인, 송화인 및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운송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서명되도록 요구하는 국내법, 관습 또는 관례가 화면상으로 혹은 컴퓨터에 의해 출력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시될 수 있는 컴퓨터 자료저장매체에 상주하며 전송으로 확인된 전자자료에 의해서 충족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 규칙을 채용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당사자들은 그 계약이 서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항변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각국의 법정이 당사자들이 국가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CMI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양수인에게 양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키의 소지자는 언제든지 서면의 운송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3.3.4. 전자선화증권의 거래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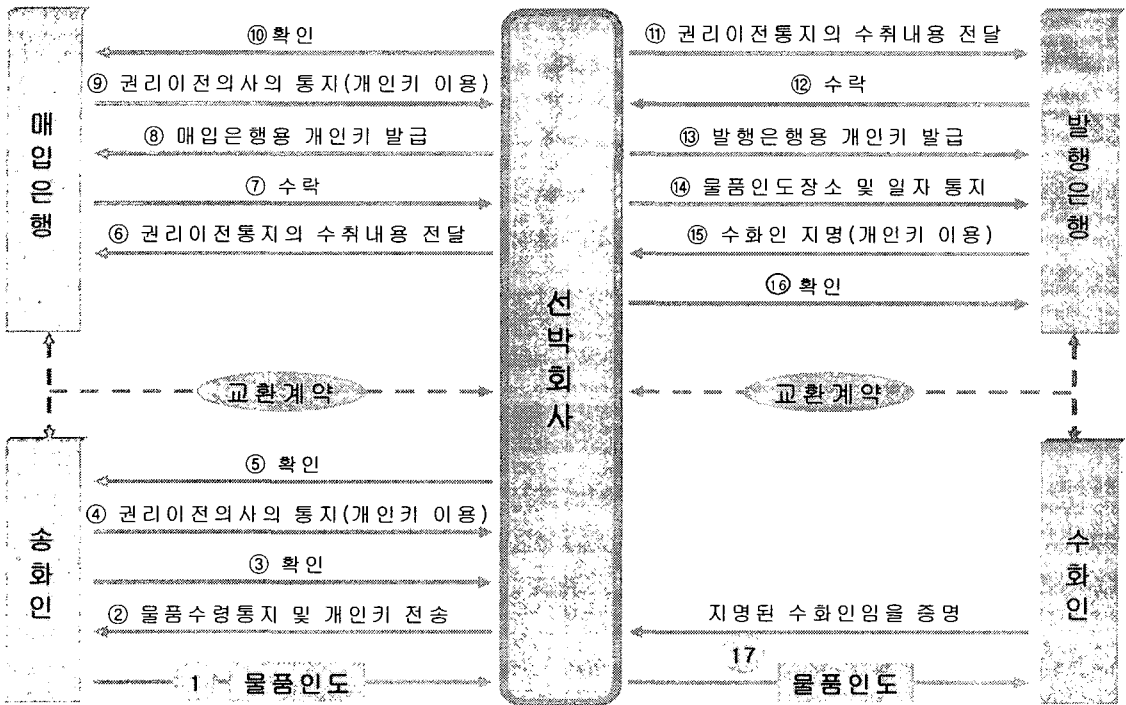
CMI규칙에 있어서는, 송화인과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전자적으로 송신하기로 약정하고 CMI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은 송화인의 선복예약서(booking note)를 확인하고, 선복예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운송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선화증권이 양도되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선박회사는 송화인, 매입은행, 발행은행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8) Jan Ramberg, *op.cit.*, p.31.

39) Paul Todd,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op.cit.*, p.121.

40) Jan Ramberg, *op.cit.*, p.31.

41) *ibid.*, p.32.



(그림 1) CMI규칙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의 거래과정

- ① 송화인은 선박회사(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 ② 운송인은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명세에 대한 수령메시지(물품수령메시지)를 통지한다. 이 물품수령메시지에는 물품에 대한 수량, 품질, 상태 등에 관한 명세가 기술된다.⁴²⁾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물품수령메시지의 통지와 함께 개인키를 전송한다.
- ③ 송화인은 운송인의 물품수령메시지의 통지를 확인한다. 즉, 송화인은 수령증에 기재된 물품명세에 동의한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송화인은 소지인(Holder)으로 되는데, 소지인⁴³⁾이란 유효한 개인키를 가지기 때문에 물품의 지배·처분권을 가지는 당사자를 의미한다⁴⁴⁾
- ④ 송화인이 물품에 관한 권리(지배·처분권)를 매입은행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화인은 그 권리이전의사의 메시지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 ⑤ 운송인은 송화인의 권리이전의사의 통지를 확인한다.

- ⑥ 권리이전통지의 수취내용 전달
- ⑦ 수락
- ⑧ 발행은행용 개인키 발급
- ⑨ 물품인도장소 및 일자 통지
- ⑩ 수화인 지명(개인키 이용)
- ⑪ 확인
- ⑫ 교환계약
- ⑬ 확인
- ⑭ 권리이전의사의 통지(개인키 이용)
- ⑮ 매입은행용 개인키 발급
- ⑯ 수취내용 전달
- ⑰ 물품인도
- ⑱ 물품수령통지 및 개인키 전송
- ⑳ 확인
- ㉑ 확인
- ㉒ 물품수령메시지 및 개인키 전송
- ㉓ 확인
- ㉔ 권리이전의사의 통지(개인키 이용)
- ㉕ 확인
- ㉖ 교환계약
- ㉗ 확인
- ㉘ 물품인도
- ㉙ 물품인도장소 및 일자 통지
- ㉚ 발행은행용 개인키 발급
- ㉛ 수취내용 전달
- ㉜ 확인
- ㉝ 수화인 지명(개인키 이용)
- ㉞ 수락
- ㉟ 권리이전통지의 수취내용 전달
- ㊱ 확인

42) CMI규칙 제4조 a/b항은 수령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① 송화인의 명칭, ② 서면에 의한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요구되었다고 생각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물품에 대한 기술(설명과 유보조항 포함), ③ 물품을 수령일과 장소, ④ 운송인의 운송조건에 대한 언급, ⑤ 시후의 전송에 사용해야 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규정하고 있다.

43) CMI규칙 제7조 a항에 의하면,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 ② 수화인을 지명하고, 또는 지명된 수화인을 자기를 포함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신하는 것, ③ 지배·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④ 서면에 의한 선화증권의 소지인과 같이 운송계약의 조항에 따라서 물품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4) CMI규칙 제2조 g항.

- ⑥ 운송인은 양수인인 매입은행(신규의 개인키 소지인으로 예정된 자)에게 송화인으로부터 수신한 권리이전의사의 통지내용에 포함된 물품명세의 정보를 전송한다(송화인의 개인키는 제외).
- ⑦ 매입은행은 지배·처분권을 수락하는 취지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 ⑧ 운송인은 기존(송화인)의 개인키를 폐지⁴⁵⁾하고 신규소지인(매입은행)에게 신규개인키를 발급한다. 이 때, 신규소지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 ⑨ 송화인이 물품에 관한 권리(지배·처분권)을 발행은행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화인은 그 권리이전의사의 메시지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 ⑩ 운송인은 매입은행의 권리이전의사의 통지를 확인한다.
- ⑪ 운송인은 양수인인 발행은행(신규의 개인키 소지인으로 예정된 자)에게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신한 권리이전의사의 통지내용에 포함된 물품명세의 정보를 전송한다(매입은행의 개인키는 제외).
- ⑫ 발행은행은 지배·처분권을 수락하는 취지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 ⑬ 운송인은 기존(매입은행)의 개인키를 폐지하고 신규소지인(발행은행)에게 신규개인키를 발급한다.
- ⑭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예정에 대한 장소와 일자를 발행은행에 통지한다.
- ⑮ 발행은행은 개인키에 의한 증명을 사용하여 수화인을 지명하고, 운송인에게 인도지시를 한다. 발행은행이 수화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신이 수화인으로 간주된다.

- ⑯ 운송인은 수화인의 지명과 인도지시의 사실을 확인한다.
- ⑰ 운송인은 인도지시에 의한 수화인임이 확실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한다. 즉, 발행은행이 지명한 수화인에 대해서 본인이라는 취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키와 관계없이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은행에 부여된 개인키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Ⅳ. 볼레로 선화증권

4.1. 볼레로 선화증권의 의의

볼레로 선화증권(Bolero Bill of Lading)은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함께 BBL 원문(BBL text)”⁴⁶⁾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볼레로 선화증권은 종이매체를 전자적 기록으로 대체하고 있으면서 선화증권의 전통적인 거래의 의미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볼레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주요 원문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이며, BBL 원문에 관한 거래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이다. 볼레로 선화증권은 전통적인 종이 선화증권에 대한 전자적인 대안으로서, 그 선화증권이 발행된 후에 그 선화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배서 등)를 기록하는 중앙등록기(central registry)의 기록에 링크된 전자서류이다.

볼레로 선화증권은 전통적인 종이증권의 기능을 대체하지만, 신속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수반하고 있으며, 전자적 양식은 전자서명에 의하여

45) 개인키는 수자 및/또는 문자를 조합시킨 비밀번호이지만, 각소지인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소지인은 개인키를 양도할 수 없다. CMI규칙 제2조 f항 및 제8조 a항.

46) bolero.net, Bolero RuleBook Part 1.1.(11).

더 큰 정보보안(위조 및 사기가 보다 적음)을 확보하고 있다. 즉 불레로 선화증권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worthy third party)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메시징을 통하여 선화증권의 본질적인 거래기능을 구현한다. 불레로 선화증권이 제공하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신속성을 제공한다. 불레로넷은 중요한 정보나 거래를 종이 선화증권보다 더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둘째, 경제성으로서, 저렴한 비용을 제공한다. 메시지 비용은 상업서류송달업자(couriers)나 기타 종이수단을 통하는 것보다 불레로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셋째, 효율성을 제공한다. 불레로넷은 중심으로 모든 거래를 로그(log)하고 추적하며, 전자식 불레로 선화증권에서 전자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전시키는 것이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 적고 데이터의 입력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용선선화증권(Chartered Bill of Lading)은 나용선계약 또는 선박임대차계약이외에, 용선계약이 있는 선박의 본선적재 운송이 일어나는 동일한 항해동안(항해용선) 또는 그 기간동안(기간용선)에 선박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용선계약이 있는 선박의 본선적재 운송을 위한 물품의 수령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을 의미한다.⁴⁸⁾

4.2. 불레로 선화증권의 구성요소

여기에서 불레로 선화증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레로 선화증권의 구

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불레로 선화증권은 완전히 전자화된 BBL 원문과 권리등록기록(Title Registry Record)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4.2.1. BBL 원문

BBL 원문(text)은 불레로 선화증권의 서류의 구성요소로서 중앙메시징플랫폼에 송신되고 권리등록기에 기록되는 서류이며, 해상운송인이 물품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즉,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전통적인 선화증권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통상적인 해상관행에 따라 고장부(claused) 또는 무고장, 선적 또는 수취 등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계약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

4.2.2. 권리등록기록

권리등록기록(Title Registry Record)은 권리등록기에서 유지되고, BBL 원문에 연결되고, 그리고 관련 불레로 선화증권과 연관되어 권리등록지시로부터 발생하는 구조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즉, 권리등록기록은 불레로 선화증권이 생성되고 그 선화증권의 BBL 원문이 발행된 후에 그 선화권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를 수행한다. 그 선화권은 사용자가 권리등록기록에 있는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이전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권리등록기록에 입력을 통하여 불레로 선화권을 제시하거나 이를 종이로 전환한다.

4.3. 불레로 선화증권의 권리이전

4.3.1. 불레로 선화증권의 생성

각 운송인은 용선선화증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된 메시지의외의 불레로 선화증권

47) <http://www.belero.net/decision/legal>: 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

48) [belero.net](http://www.belero.net), Bolero RuleBook, Part 1.1(20).

49) [belero.net](http://www.belero.net), Bolero RuleBook Part 1.1.(6), (55); <http://www.belero.net/decision/legal>(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

으로서 자신에 의해서 송신된 어떤 메시지가 BBL 원문내에서 ① 운송인에 의해 본선상에서 선적되거나 또는 선적을 위해 수취된 물품의 수령을 운송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② 운송계약의 조건을 포함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여야 하는데 그 메시지는 권리등록기에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운송인이 용선선화증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된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하고 송화인과 소지인으로서 첫용선자(head charter)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BBL 원문은 운송인과 첫 용선자간의 운송계약의 조건을 포함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BBL 원문은 그 운송인에 의하여 본선에 선적되거나 선적을 위해 수취된 물품의 수령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2.2.2의 대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BBL 원문에서 주화인, 번호, 수량, 중량 또는 물품의 외관상태에 관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진술은 그 진술이 종이 선화증권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 운송인을 구속할 것이다.

운송인이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화인의 지시에 따라 ① 송화인을 지정하고, ② 선화증권의 소지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 지시당사자(지정된 소지인과 동일하지 않는)를 지정하거나, 수화인(지정된 소지인과 동일하지 않는)을 지정하거나, 또는 볼레로 선화증권을 백지배서하여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참인 소지인으로서 소지인을 지정한다. ② 또는 ③에 관한 어떤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지참인 소지인으로서 송화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⁵⁰⁾

4.3.2. 볼레로 선화증권의 양도

볼레로 선화증권은 양도가능 또는 양도불능일 수 있는데, 운송인이 양도가능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하기로 의도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지시당사자(To Order Party)를 지정하거나 선화증권에 백지배서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양도불능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하기로 의도한 경우에는 수화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⁵¹⁾

첫째, 운송인이 지시당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운송인은 ① 볼레로 선화증권의 지시식 소지인이 되는 그러한 지시당사자가 새로운 지시당사자, 담보권자 소지인, 지참인 소지인 또는 수화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② 어떤 후속 지시식 소지인, 담보권자 소지인, 지참인 소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운송인이 송화인이 아닌 지참인 소지인을 지정하고 있는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함으로써, 운송인은 볼레로 선화증권에서 기술된 물품을 지참인 소지인의 지시식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운송인이 볼레로 선화증권이 백지배서되어야 한다는 권리등록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① 소지인이 지참인 소지인이며, 새로운 지참인 소지인, 지시당사자, 지시식 소지인, 담보권자 소지인 또는 수화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② 어떤 후속 지시식 소지인, 담보권자 소지인 또는 지참인 소지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볼레로 선화증권의 양도는 볼레로 규약집의 제3부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사용자는 해당 볼레로 선화증권에 대해 권리등록기록의 역할필드(role field)에서 다른 사용자를 지정함으

50) bolero.net, Bolero RuleBook, Part 3.1.(1)~(4).

51) bolero.net, Bolero RuleBook, Part 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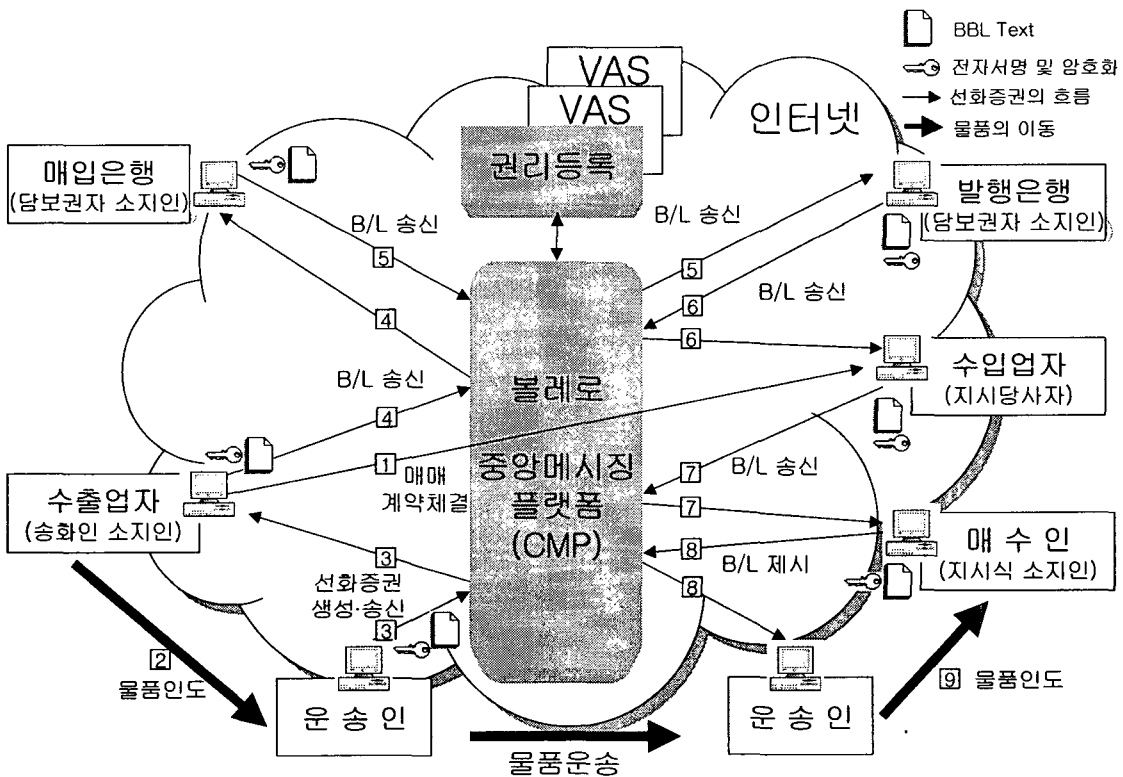
로써 양도한다. 볼레로 시스템은 종이 선화증권과 전통적인 관습에 근거한 네 가지 유형의 양도를 인정한다.⁵²⁾

첫째, 한 소지인이 볼레로 선화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선화증권이 유형의 형태인 경우, 소지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선화증권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양도는 양수인을 지정하는 현재의 소지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볼레로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양도는 종이 선화증권을 “기명식(straight)” 또는 “비유통성(non-negotiable)”으로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수화인이 지정되어 있는 볼레로 선화증권은 지시당사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백지배서할 수 없다. 물론 수화인이 소지인인 경우에는 볼레로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셋째, 볼레로 선화증권을 지시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작성자(운송인)가 새로운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하는 경우, 지시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피지정인의 지시식으로 유통성 종이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그것을 소지인(아마 송화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지시당사자가 소지인 및 지시식 소지인이 아닌 한, 그 능력은 매



(그림 2) 볼레로 선화증권의 거래과정

52) bolero.net, Appendix to Bolero RuleBook(Operating Procedures), 2nd ed., section 4.4.3.

우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지시식 소지인 또는 지참인 소지인이 지시식 소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특정 피배서인에게 선화증권을 배서하는 것과 유사하다.

넷째, 불래로 선화증권을 백지배서하여 지참인 소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백지배서는 불래로 선화증권이 백지배서됨으로써 현재의 지시당사자를 배제한다. 그것은 그 소지인을 변경함으로써 단순히 양도가능한 불래로 선화증권으로 된다. 그것은 지참인에 의한 양도가능한 종이 선화증권과 유사하다.

4.4. 불래로 선화증권의 운용

불래로 선화증권은 유통성과 비유통성으로 구분되는데, 유통성 선화증권이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그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³⁾

- ① 매도인은 화환신용장을 사용하여 CIF조건의 특정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 ②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은 이를 적재한다.
- ③ 운송인은 불래로 선화증권을 생성하고 매도인을 불래로 선화증권의 송화인 소지인으로 지정하고, 수입업자를 지시당사자로 지정한다.
- ④ 매도인은 매입은행을 불래로 선화증권의 담보권자 소지인으로 지정하고, 전자서명된 불래로 메시지를 통하여 요구된 서류를 송신한다.
- ⑤ 매입은행은 불래로 선화증권을 점검하고, 그것이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의 계좌에 대기한다. 그리고 발행은행을 새로운 담보권자 소지인으로 지정한다.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이 확인한 신용장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 ⑥ 발행은행은 요구한 서류를 추가로 심사하고, 수입업자의 계좌에 차기한다. 발행은행은 그 담보권을 포기하고 수입업자를 불래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으로 지정한다. 그 수입업자는 이미 그 선화증권에 대한 지시당사자이다. 그리고 현재 소지인으로서 수입업자는 그 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운송인을 대리하여, 불래로 인터넷서널사는 운송인이 그 자신의 지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한다.
- ⑦ 수입업자는 운송중인 물품을 다른 매수인에게 매각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그 매수인을 불래로 선화증권의 지시식 소지인(소지인과 지시당사자)으로 지정한다. 운송인을 대리하여, 불래로 인터넷서널사는 운송인이 그 자신의 지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지시식 소지인에게 통지한다.
- ⑧ 물품은 목적항에 도착하고 그 매수인은 불래로 선화증권을 제시한다. 현재 어떠한 추가적인 불래로 기반의 거래도 그 선화증권에 대하여는 가능하지 않다. 불래로 인터넷서널사는 운송인에게 제시의 통지를 하고 매수인에게 제시를 확인한다.
- ⑨ 매수인의 대리인은 운송인 및/또는 항구에 의해서 요구된 신원확인의 증거를 항구에서 확인받는다. 그 운송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한다.

53) [http://www.belero.net/decision/legal\(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http://www.belero.net/decision/legal(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

V. 결론

전자무역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화증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선화증권이 무역거래에 도입되었다. 즉,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의 해상무역서류시스템(Seaborne Trade Documentation System: SeaDocs), 미국 체이스 맨하턴(Chase Manhattan)은행의 체이스 전자선화증권(Chase Electronic Bills of Lading: CEBOL) System, 무어(John C. Moore)의 전자서류(Electrodoc), 칩선화증권시스템, 바코드(Bar code)선화증권시스템, 발틱국제해운동맹(Ba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BIMCO)의 전자선화증권 등의 초기의 전자선화증권은 광범위하게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운송중의 물품에 대한 권리의 전자적 이전의 방법을 강구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무역간소화위원회(NCITD)의 법률문제작업부회는 ECE/WP.4의 1990년 9월 회기에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고 각국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종이의 유통성 선화증권에 상당하는 전자선화증권의 메시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guide line)과 절차에 대하여 제안을 행하였으며, 1990년 6월 CMI(국제해사위원회;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는 국제운송시장에 복합운송이 정착되면서 무역거래의 모든 분야에서도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EDI방식에 의한 거래가 등장하는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Rules for Electronic B/L)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자선화증권은 볼레넷에 의한 볼레로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4년 6월 영국을 중심으로 홍콩, 네덜란드, 스

웨덴, 미국 등의 해상운송회사와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형태로 시작된 “볼레로프로젝트(Bolero Project; Bill of Landing for Europe, Bill of Lan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의 결과로서, SWIFT와 TT클럽이 주축이 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전자결제 업체인 볼레로넷은 1999년 9월에 그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볼레로넷에 의하여 개발된 전자선화증권이 가장 최근의 전자선화증권인 것이다.

결국 초기단계의 각종의 전자선화증권의 시도에서부터 NCITD 및 CMI규칙의 전자선화증권, 그리고 볼레로넷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이 국제무역거래에 도입되었지만, 이들 선화증권이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들 전자선화증권이 모든 무역업자에게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령 및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전순환, “전자무역거래관행의 변화에 관한 고찰”, 「창업정보학회지」, 제6권 제1호, 2003. 3.
- 江頭憲治郎,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日本海法會誌」, 復刊 第34號, 通卷 第63號, 勁草書房, 1990.
- 江頭憲治郎, “海上運送狀と電子式 運送書類”, 「日本海法會誌」, 復刊 第32號(通卷 第61號), 勁草書房, 1988.
- 新堀 聰, “いわめる電子式船荷證券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19, No.8, 1991, p.1007.
- 日本貿易關係手續簡素化協會, “貿易手續のEDI化

- に係る法的問題”, JASTPRO 91-19, 1991.
- 日本貿易關係手續簡易化協會, “貿易關係 EDI用語集”, JASTPRO 89-13, 1990.
- 朝岡良平, “電子商去來時代における貿易慣習”, 『早稲田商學』, 第376号, 1998.
- bolero.net, *Appendix to Bolero RuleBook(Operating Procedures)*, 2nd ed., section 4.4.3.
- bolero.net, *Bolero RuleBook*
- Boris Kozolchyk,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J.M.L.C.*, Vol.1.23, No.2, April 1992.
- Hugh M. Kindred, Trading internationally by electronic bills of lading, *Banking & Finance Law Review*, Vol.7, 1992.
- [http://www.belero.net/decision/legal\(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http://www.belero.net/decision/legal(Welcome to Legal Aspects of a Belero Bill of Lading))
-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1991 (ICC Publishing S.A.).
- Jan Ramberg, The implication of new transport technologies, *European Transport Law*, Vol.15. No.2, 1980.
- Joseph Bonney, *Bills of Lading in bar code*, American Shipper, August 1992.
- Joseph Bonney, *Computer chip in a can*, American Shipper, August 1992.
- Paul Todd,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90.
-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Proposed by NCITD*, TRADE/WP. 4/R. 710.
- UNEC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RADE/WP.4/R.710, 15 August 1990.

A Study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the Electronic Trade Era

Soon-Hwan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the electronic trade era. The term "electronic trade" means all or part of any such trade as implemented by means of apparatus having th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such as a computer, and network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long been considered essential by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community as a key means of reducing its costly reliance on paper.

Key Words: E-Trade, E-B/L, CMI E-B/L, Bolero B/L, NCITD E-B/L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Joongbu University